

10. 동업반환금 청구

㉠ 동업반환금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홍○남, 성○우에게 각 57,699,592원, 원고 성○경, 성○호에게 각 38,466,3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홍○남, 성○우에게 각 돈 270,000원, 원고 성○경, 성○호에게 각 돈 1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을 상속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원심판결이 조합지분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 및 판단유탈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판결)

㉡ 동업금반환등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4,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 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